

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복지건강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12일, 최태림 의원 외 15명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8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,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(2022년 8월 25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축조심사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최태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, 경제불황, 치열한 경쟁, 사회 계층간 대립 등으로 외로움이 보편화 되고,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회적 관계 단절속의 외로움을 겪는 기간과 그 정도가 심화됨
- 지속적인 외로움으로 도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거나 고독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는 등 외로움에 관한 종합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“외로움”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외로움 극복 및 예방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4조)
- 외로움의 원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외로움 척도의 개발
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, 안 제6조)
-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8조, 안 제9조)
-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승언)

가. 제안이유

-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,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,
경제 불황,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이
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

- 일찍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영국은 외로운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부서를 만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
-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대책팀을 신설하여 외로움 지수 개발, 외로움 실태조사,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 수립·시행 등을 추진하고자 함
- 이에 경상북도가 외로움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외로움 종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'외로움'에 관하여 정의함
 - 아직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'외로움'에 관하여 정의함으로써 본 조례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3조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에 대한 노력을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

- 도지사가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을 수립·시행 하도록 규정함
 - 경상북도에 적합한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을 발굴·개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, 자원마련 등을 계획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외로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경상북도에 적합한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의 발굴·개발과 외로움 척도 개발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수적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외로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효율적인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수적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·군, 법인,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 - 또한, 외로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·군, 법인,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도지사가 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,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,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외로움 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문제임

- 영국, 일본 등은 장관을 임명하거나 부서를 만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외로움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 하고 있음
- 경상북도는 외로움 전담팀을 설치하고 외로움 실태조사, 외로움 척도 개발 등 ‘경상북도 맞춤형 K-외로움 대책’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
- 「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」가 제정 되어 있으나, 이는 어디까지나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으로 외로움 정책 추진의 법적근거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
-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경상북도가 외로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